

제 호

소독업 신고증

- 성명(대표자): (생년월일:)
- 상 호:
- 소재지: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(뒤 쪽)

변경 및 처분 내용